기초학력 보장법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 강득구·신정훈·임오경

최종윤·조승래·서삼석

박성준・양기대・고영인

유동수 · 민형배 · 이원욱

임종성 · 이용우 · 양정숙

오영환 · 홍영표 · 유영덕

홍기원 · 이성만 · 강준현

김원이 • 전해철 • 문정복

김민철 · 서동용 · 정청래

문진석 의원(28인)

제안이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임.

그러나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 9'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임.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 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 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 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각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 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 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 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

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 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 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